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008
------------	------

발의연월일 : 2009. 10. 7.

발 의 자 : 김판동 의원

의 7 인

□ 제정이유

-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의 효율적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 대상 도로점용공사의 범위를 규정함 (안 제2조)
-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소통대책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교통소통대책을 도로관리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안 제8조)
- 교통소통대책 이행을 위한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 (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말췌서

- 도로법 제20조, 제83조, 제84 및 제99조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30조, 제34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 나. 지하철·궤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 다.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 라. 전력 및 통신 공사
 - 마.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교통안전 및 고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또는 착공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심의위원

회에서 심의·조정하는 도로점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교통소통대

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08
----------	------

제안년월일 : 2009. 10. 21.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교통소통대책의 제출시기 규정하고,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처리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교통소통대책을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교통소통대책을 제출받은 다음 달 1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통보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2호 가목 중 “신설 · 개설 · 유지관리”를 “개설 · 유지관리”로
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매년 1
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심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
로관리심의회에 대행하여 심의 · 조정하며,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그 밖에 심의 · 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중 “고발할 수 있다”를 “고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도로점용공사”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p> <p>가. 도로의 <u>신설·개설·유지관리</u> 및 도로 부속물 공사</p> <p>나. ~ 마. (생략)</p> <p>3. (생략)</p>	<p>제2조(정의) -----</p> <p>1. (원안과 같음)</p> <p>2. -----</p> <p>-----</p> <p>-----</p> <p>-----</p> <p>가. ----- <u>개설·유지관리</u> -----</p> <p>-----</p> <p>나. ~ 마. (원안과 같음)</p> <p>3. (원안과 같음)</p>
<p>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u></p> <p>1. ~ 8. (생략)</p>	<p>제3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원안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매년 1월, 4월, 7월 및 10월 중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 8. (원안과 같음)</p>
<p>제8조(심의위원회)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심의·조정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p>	<p>제8조(심의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소통대책을 안산시 도로관리심의회에 대행하여 심의·조정하며, 제3조제2항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는 다음 달의 1일부터 30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원 안	수 정 안
<p>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고발할 수 있다.</p>	<p>② 그 밖에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p> <p>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 ----- ----- ----- 고발하여야 한다.</p>